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

(기관명: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)

2019. 7.

고 용 노 동 부
감 사 관 실

【순 서】

Ⅰ. 감사실시 개요 ····· 1

1. 감사대상기관 ····· 1

2. 감사범위 ····· 1

3. 감사기간 및 인원 ····· 1

4. 감사중점사항 ····· 1

Ⅱ. 감사대상 현황 ····· 2

Ⅲ. 감사결과 ····· 3

1. 총평 ····· 3

2. 지적사항 총괄 ····· 3

3. 분야별 지적사항 ····· 3

Ⅰ. 감사실시 개요

1. 대상기관: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

2. 감사범위: ‘16.6.25.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○ 기 간: ‘19.5.20.～5.24.(5일간)

○ 인 원: 감사담당관 외 6명

4. 감사중점사항

［공통사항］

○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

○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

［고용·관리］

○ 예산집행, 물품관리, 체납처분

○ 개인정보 보호, 각종 신고서 등 처리 업무

○ 직업능력개발훈련, 각종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 등

［근로개선지도］

○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・감독 업무

○ 지명수배(통보)・해제, 인·허가 등 승인 업무 등

［산재예방지도］

○ 중대재해 조사, 작업중지 관련 업무 등

Ⅱ. 감사대상 현황

○ **(행정대상)** 관할구역은 4개 자치구(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, 관악구), 인구 1,541천명('19.4월), 사업장 62,592개소, 종사자 573,518명('17년)

○ **(지역특성)** 구로·금천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(G밸리) 입지, 관악·동작구는 교육·보건 관련 산업 및 도소매점 밀집

- 구로구는 첨단디지털산업과 각종 제조업이 공존(도심공업 지역), 금천구는 서울지역 내 제조업(금형 등)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음

  ※ 특히 SW개발공급, 정보서비스는 구로·금천구에 집중

- 관악구는 숙박・음식점·교육서비스 관련 산업 및 도소매점 밀집, 동작구는 대학과 학원가가 밀집한 교육 서비스업 중심지

○ **(고용동향)** 서울지역 고용률(15~64세, 65.8%)은 전국 평균(66.5%)보다 낮고, 실업률(5.2%)은 전국 평균(4.4%)보다 높음('19.4월)

- '19.4월 관내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,717명, 구직자는 11,053명, 이 중 5,138명이 취업

  ※ 전년 동월 대비 구인 3.7% 증가, 구직자수 0.9% 감소, 취업자수는 7.3% 감소

○ **(노사관계)**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245개소, 조합원은 24,454명*

* 한국노총 89개소(36%, 11,650명), 민주노총 53개소(22%, 3,489명), 미가맹 103개소(42%, 9,315명)

- 근로시간 단축,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인상,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갈등 다수 발생

○ **(산업안전)** 산업재해율(0.06%)은 전국평균(0.09%)보다 낮고,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감소(3명<'18.4월말> → 2명<'19.4월말>)

○ **(직원현황)** '19.5.24. 기준, 정원 291.5명(비공무원 포함), 현원 264.5명으로 충원률은 90.7%

Ⅲ. 감사결과

1. 총 평

○ 고용·관리 업무

- 당직 관리, 체납처분 업무 등 다소 미흡
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및 청년·장년인턴지원금 부적정 지급(부정수급 의심),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좌 부적정 발급(부정수급 의심)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업무 소홀 등 일부 미흡

○ 근로개선지도 업무

- 신고사건 처리 업무(사건 지연처리 등), 사업장 감독 업무, 인·허가 등 승인, 도산 등 사실인정, 파견사업 관리업무 등이 다소 미흡

○ 산재예방지도 업무

- 과태료 부과 사업장 본부 보고 등 다소 미흡

2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 건, 천원, 명)

합 계			변상 (인원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경고·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사례 (인원)
총 건수	신분상 조치 인원	재정상 조치 금액			소계	회수·추급	기타						
19	32	67,578	-	-	11 (67,578)	4 (57,578)	7 (10,000)	8 (32)	-	-	-	-	-

*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25명(중복 7명)

3. 분야별 지적사항(요약)

가. 고용·관리 분야

1 공무원 근무사항(당직) 관리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당직근무를 대체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 **당직업무 소홀**

○ **(조치사항)** 전 직원에 대하여 **복무관리 교육** 실시

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(회수)

○ **(위반내용)**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자에게 출장**여비 18,000원(2건) 과다 지급**

○ **(조치사항)** 과다 지급한 출장 **여비 18,000원 '회수'** 조치

3 과태료 등 징수금 체납처분 업무 부적정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과태료 등을 미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독촉·압류 등 **체납처분 미실시**(44건)

○ **(조치사항)** 체납처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○○○ 등 2명 **'주의'** 조치

4 업무용 차량의 유류구매 방법 부적정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 업무용차량 유류**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조달청 등록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함에도 **일반 수용비 카드**로 구매

○ **(조치사항) 유류구매카드를 발급**받아 사용 및 직원 교육 실시

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등 부정수급 의심 등(회수)

○ **(의심내역)** ①채용된 사실을 숨기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**취업성공수당 등 2,600,000원**(6명) **부정수급,** ②방위산업체에 병역특례자로 입대하고도 **취업성공수당 700,000원 부적정 수급**

○ **(조치사항)** 부적정 여부 확인 후 수당 **3,300,000원 '회수'** 조치

⑥ **청·장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심(회수)**

○ **(의심내역)**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허위 채용하여 **지원금 18,900,000원**(3명) **부정수급**

○ **(조치사항)** 부적정 여부 확인 후 지원금 **18,900,000원 '회수'** 및 **34,200,000원**의 **'추가징수'** 조치(총 53,100,000원)

⑦ **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좌 부정발급 의심(시정)**

○ **(위반내용)** 직업능력 개발훈련 계좌 발급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었음에도 **부정하게 계좌발급 의심**(1명)

○ **(조치사항)** 부적정 여부 확인 후 **부정수급액 1,160,320원 회수, 훈련수강 제한 등**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

⑧ **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업무 소홀(시정)**

○ **(위반내용)**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처리 시 법인의 임원 일부에 대해 **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누락**(1건)

○ **(조치사항)**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관련 사항 **교육** 실시

나. 근로개선지도 분야

① **신고사건 처리 부적정(경고, 주의)**

○ **(위반내용)** 고소·고발·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,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64일~117일간 **지연처리**(10건)

○ **(조치사항)**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○○○ 등 **3명 '경고'**, ○○○ 등 **4명 '주의'** 조치

2 기소중지자 관리 업무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소재발견 통보된 **지명통보자**에 대한 **조치 지연**(12건)

○ **(조치사항)**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관련 사항 **교육** 실시

3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등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①감독 후 결과**보고 지연**(6건), ②감독결과 보고 후 **시정지시 지연**(17건), ③확인감독 **보고지연**(28건), ④**반복 위반사항**(최근 3년간 동일 사항 위반) **미조치**(1건)

○ **(조치사항)** 사업장 감독 결과보고 업무 등을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등 **8명 '주의'** 조치

4 인·허가 등 승인업무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인·허가, 승인 관련 민원서류를 30일~99일까지 **지연처리**(32건), 5일~52일 **소급**하여 **인가**(13건)

○ **(조치사항)** 인·허가 등 승인업무 등을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등 **6명 '주의'** 조치

※ ○○○, ○○○는 '1 신고사건 처리 부적정'과 병합하여 경고

5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처리 소홀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도산 등 사실인정 **심의위원회 미개최**(31건) 및 **현지출장**을 통한 사실 확인 **없이** 도산 등 사실인정(19건)

○ **(조치사항)**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등 **4명 '주의'** 조치

※ ○○○은 퇴직하여 조치 생략

6 근로자파견사업 관리업무 소홀(주의, 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①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전결권자(지청장) **결재 없이 업무처리**(37건), ②근로자파견업 허가 기준요건 미충족(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등) 사업장에 대한 **행정처분 미실시**(5개소)

○ **(조치사항)** ①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위임전결규정을 3건 이상 미준수한 ○○○ 등 **4명 '주의'**, ②요건 미충족 사업장은 사실관계 조사 후 **'행정처분' 등** 조치

7 위임전결규정 미준수(주의)

○ **(위반내용)** 신고사건, 인·허가 등 처리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**1인 결재** 후 종결(212건)

○ **(조치사항)** 담당자 임의로 212건을 1인 결재한 ○○○ **'주의'** 조치

다. 산재예방 분야

1 과태료 부과 사업장 본부 보고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**처분 실적 미보고**(2건)

○ **(조치사항)**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관련 사항 **교육** 실시

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조치 소홀(시정)

○ **(위반내용)**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(지연제출) 사업장 **과태료 부과조치 소홀**(1건)

○ **(조치사항)** 과태료 미부과 사업장(1개소)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**'과태료 부과'** 조치*

* 과태료 미부과금액 **10,000천원**(감경기준 미적용 금액)